

2026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정형재활기기과)
의료제품분야 심사원(일반·대체근로자) 채용공고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정형재활기기과)에서 근무할 ‘심사원’ 을
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26년 7월 15일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

1. 채용예정인원

- 채용인원: 총 4명
- 일반 전형(3명)

구 분	부 서	등급	채용인원(명)
의료기기	정형재활기기과	나	2
		다	1
합 계			3

- 대체근로자 전형(1명)

구 분	부 서	등급	최대 계약기간	채용인원(명)
의료기기	정형재활기기과	라	2027-09-15	1
합 계				1

2. 담당 예정 업무

※ 담당 예정 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, 그 외에 「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상
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구분	부서	등급	담당 예정 업무
의료 기기	정형재활기기과	나	○ 정형재활기기(신기술의료기기 포함) 기술문서·임상자료· 임상시험계획 심사, 사전검토, 민원업무 관련 상담 등 ○ 정형재활기기 관련 제도 및 국내외 동향 조사 등

		다	○ 정형재활의료기기 기술문서·임상자료·임상시험계획 심사, 사전검토, 민원업무 관련 상담 등 ○ 정형재활의료기기 관련 제도 및 국내외 동향 조사 등
		라	○ 정형재활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, 사전검토, 민원업무 관련 상담 등 ○ 정형재활의료기기 관련 제도 및 국내외 동향 조사 등

3. 근무조건

- **신 분:**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
- **근무기관:**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
(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)
* 서울 등 원격근무가 가능하며, 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」 제24조 (전보)에 따라 향후 필요 시 서울 등 근무지, 소속부서가 변동될 수 있음
- **계약기간**
 - **일반 전형:** 채용계약일부터 ~ '26년 12월 31일까지
*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(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)
 - **대체근로자 전형:** 대체 전형별 최대 계약기간까지
* 휴직대상자의 휴직 연장 경우,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
- **근무시간:** 주 40시간
- **보수수준**

구 분		월 기본급
심사원	나급	3,400,000원(연봉 40,800천원)
	다급	2,675,000원(연봉 32,100천원)
	라급	2,158,330원(연봉 25,900천원)

- * 급식비(월16만원), 초과근무수당, 명절휴가비(6개월 이상 근무시) 별도 지급
- **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- *** 복리후생: 장기근속자 수당, 사내동호회, 우수직원포상, 맞춤형복지포인트, 체육 시설, 의무실, 카페테리아, 사내외국어강좌 운영(자기부담금)

4. 채용자격 및 우대요건

가. 공통요건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*
-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남자의 경우,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-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* 결격사유(국가공무원법 제33조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채용자격요건

※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. 다만, 최종 면접일 기준으로 학위취득자여야 함

등급	채용자격요건
심사원 나급	○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 ○'국가기술자격법'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1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
심사원 다급	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이상 취득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 ○ '국가기술자격법'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 ○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
심사원 라급	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 ○ '국가기술자격법'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○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

※ 위 채용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심사하여 서류합격자를 결정

※ 채용자격요건 해당 여부는 채용관련분야(전공)과 담당예정업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함

다. 채용관련분야(전공)

구분	채용관련분야
정형재활 기기과	○ 의과(공)학, 생체공(재료)학, (생)화학, 화(공)학, (분자)생물학, 생명공학, 재료학, 치과(학), 고분자공학, 신소재공학, 임상의학, 임상병리학, 수의학, 한의학, 전기·전자공학, 전파공학, (응용)물리학, 제어계측공학, 기계공학, 기계설비공학 등 유사분야

라. 우대사항

○ 장애인, 저소득층 대상자, 국가유공자

- *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(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)
- * 저소득층의 범위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·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

○ 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증 1급 소지자

5. 시험 방법

가.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제출서류가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단, 시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 응시한 경우, [붙임4] 서류심사 배점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합격자로 제한할 수 있음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6. 7. 31.(금) 예정
- 서류합격자 개별통보(SMS) 및 채용홈페이지 게시

나. 면접전형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

- 면접방식: 개별면접(10분 내외)로 응시자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질의·응답
- 평가기준: 면접위원이 면접평가요소에 따라 '상', '중', '하'로 평가하며, '상'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, '상'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함
- *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'하'로 평정하였을 경우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함

<면접평가요소>

- ① 식약처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※ 전형(서류·면접전형)을 거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○ 면접심사 주의사항

-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

6. 시험 일정

○ 시험 일정

시험 일정	일 자	비고
원서 접수	'26. 7. 15.(수) ~ '26. 7. 29.(수)	-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6. 7. 31.(금)	면접장소시간 등 서류합격자 개별통보(SMS) 및 채용홈페이지 공지
면접 시험	'26. 8. 5.(수)	
최종합격자 발표	'26. 8. 7.(금) (예정)	합격자 개별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※ 신원조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은 채용 불가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근무 시작일은 채용합격자 신원조사 후 결정

7. 응시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

가. 응시일시 및 방법

- 응시기간 : '26. 7. 15.(수) 12:00 ~ '26. 7. 29.(수) 23:00
- 응시방법 :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(<http://employ.mfds.go.kr>)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제출 (인터넷 응시만 가능)
- ※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

나. 응시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 목록
공통 서류 (필수 제출)	-응시원서(시스템 입력) -자기소개서(시스템 입력) -주민등록초본(남녀 공통,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) -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붙임1) -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(붙임2) -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(붙임3) -최종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, 학위증명서 등) ※ 석·박사 수료 및 수료예정 증명서 미인정 -성적증명서(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, 전공 확인용)
선택 서류 (필요시 제출)	-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 국민연금가입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시 경력 인정 불가 -기타 면허(자격)증 사본 -어학성적서 -연구목록 및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(운전면허 제외)

*진위확인을 위해 반드시 최근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

-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
- 학력, 경력,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본인, 발행기관,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
 - 학력증명서, 자격증 등은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
 - ※ 문서확인기간이 지난 서류 제출시 문서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 -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, 휴직기간, 직위(직급) 및 담당업무(구체적으로 기재),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명시된 것으로 제출
 - ※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나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,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
- 학력·자격 등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은 공고 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
- 최종학력은 최종시험일(면접일)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함

라. 면접심사 시 주의사항

-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

8. 기타 유의사항

-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, 근무기관(지역)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제출된 서류는 아래 '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'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-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 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 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 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 -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,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, 개인 사정으로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별도의 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신원조회 · 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-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,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제출서류 미비,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 - 채용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,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

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형재활기기과로(☎ 043-719-4013, 4016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9.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- 기본증명서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주민등록등본·초본 1부(남녀 공통 제출)
 - *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
- 최종학력증명서 1부
- 통장사본 1부
- 신원진술서(약식) 1부
- 반명함판 사진 2매, 흰색 바탕 사진 파일 제출
(JPG, 해상도 300이상, 354픽셀 * 472픽셀)
-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부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(제17조제1항 관련)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

☐ [필수]기본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국적, 주소, 생년월일, 연락처, 계좌은행, 계좌번호, 전자우편주소, 학력, 학위, 수상실적, 경력·재직사항, 가족사항, 차량번호	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급여지급,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·복무 기록관리, 청사출입관리	근로관계 종료 후 3년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☐ [필수] 민감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
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국가유공자정보, 장애정보, 북한이탈주민정보	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법적사무처리	근로관계 종료 후 3년

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☐ [필수] 기본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	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	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※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 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(제24조제2항 관련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<u>공직자</u>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☐ 비해당 ☐
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<u>부패행위</u>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☐ 비해당 ☐
3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u>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☐ 비해당 ☐
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해당 ☐ 비해당 ☐
4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u>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☐ 비해당 ☐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</u>	해당 ☐ 비해당 ☐
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‘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☐ 비해당 ☐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☐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☐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 년 월 일

생년월일

. . . 지 원 자

(서명)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「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」제23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-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 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0 년 이후에

채용예정자: (서명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(또는 소속기관의 장) 귀하

붙임 4 서류심사 배점 [서류합격자 3배수 이상 제한시]

심 사 항 목		배점	심사항목별 배점		
			상	중	하
자기소개서 (직무적합성, 내용충실성 등)		60	60	45	30
관련 경력 (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)		15	15 (2년 이상)	10 (1년~2년)	5 (6개월~1년 미만)
관련분야 최종학위		15	15 (박사)	10 (석사)	5 (학사 이하)
어학		10	10 (토익 900, TEPS 766(New TEPS 430), 토플 105 이상)	7 (토익 800, TEPS 637(New TEPS 348), 토플 91 이상)	5 (토익 700, TEPS 556(New TEPS 301), 토플 80 이상)
추가 점수	장애인 및 저소득층	3	3 (해당자)		
	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증 1급 소지자	3	3 (해당자)		
	국가유공자	10	10 (10% 대상자)	5 (5% 대상자)	

※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위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 전형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